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유사성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복귀 개념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해외 사업장이 제조업인 경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제1항)
- 나.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 외에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 다.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면제 적용대상을 사업장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핵심제조시설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의2)

- 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5조의4)
- 마.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중
-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인정받은”을 “인정받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을 “연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제5조의4에 따른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로 하고, “소재·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소재·부품, 생산공정, 기능·용도, 핵심적인 기술, 공급망 등의 유사성”으로 한다.

마.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경우
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을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품등”을 각각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제품등”을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고시하는 제품등”을 “고시하는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기술 또는 제품 분야에서 생산기술의 연구 개발, 시험제품 실증생산, 표준화를 통해 국내 또는 국외 생산거점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품질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장(이하 “핵심제조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핵심제조시설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 ①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및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내 복귀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직원 중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투자·금융 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장의 신설·증설 등)	제3조(사업장의 신설·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① ----- ----- ----- -----.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 -----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마. <u>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경우</u>
<u><신 설></u>	바. <u>「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u>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 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

2. -----

가. -----

----- 인
정받는 --

나. -----

연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
는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의4에 따른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

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첨단산업 등) 법 제2조 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구하고 사용되는 소재·부품, 생산공정, 기능·용도, 핵심적인 기술, 공급망 등의 유사성-----

-----.

제3조의2(첨단산업 등) ① -----

----- 사업장-----

-----.

1. -----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2. -----

--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
장동력산업기술 또는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
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5. 대외 의존도, 대체 제품등의
최소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제품
등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
시하는 제품등

<신 설>

3. -----

----- 한정한다)을
생산하는 사업장

4. -----

----- 제품등을 생산
하는 사업장

5. -----

----- 고
시하는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
업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
기술 또는 제품 분야에서 생
산기술의 연구개발, 시험제품
실증생산, 표준화를 통해 국내
또는 국외 생산거점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품질관리 등 역할
을 수행하는 사업장(이하 “핵

<신 설>

<신 설>

심제조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핵심제조
시설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
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
회) ①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및 검
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내복귀지원실무위
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을 심의·의결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
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
다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 국내복귀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
무원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
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의 임직원 중 사장이 추천
하는 사람

3. 산업·투자·금융 또는 국내
복귀기업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
다.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을 말한다. <단서 신설>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략)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신설>	① ----- ----- ----- . 다만,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 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연 락 처	(044) 203 - 4095